

##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조례 (경제농정국 투자유치과) [시행 2022. 1. 1.]

( 제정) 2019.12.20 조례 제3616호  
(전부개정) 2021.12.24 조례 제3778호

관리책임부서 : 투자유치과  
연락처: 031-839-2023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 민간자본의 대규모 투자사업과 국내·외 기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유치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규모 투자사업”이란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의 국내 자금이 투입되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국인투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른 미화 1,000만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집객효과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제7조에 따라 대상자로 지정을 받아 대규모 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5. “총사업비”란 대규모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조사비, 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설치비, 부담금,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유치기업”이란 제7조에 따라 협약이 체결된 기업을 말한다.
7.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9. “이전보조금”이란 관외나 외국에 소재하는 공장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최근 3개월간 근로소득자의 평균인원을 말한다.
11. “노후산업단지”란 공장건물, 도로, 상하수도, 녹지 등의 물리적 시설이나 환경이 낡고 부실화되어 산업기반활동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어려운 산업단지를 말한다.
12.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3. “첨단업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 제2장 위원회 등

**제3조(위원회 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연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연천군의회의원 2명
  2. 투자유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명 이내
  3. 기업 관련 유관 기관 소속 전문가 3명 이내
-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안에 따라 투자유치과과장이 지명하는 투자유치 담당 또는 기업지원 담당으로 한다.
-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국내·외 대규모 투자사업 및 기업지원 지원대상자 지정에 관한 사항
2.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토지매수 등의 업무대행 협약에 관한 사항
4. 기업유치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후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7.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제3장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제6조(대규모 투자사업 지정)** 군수는 투자자의 투자사업 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 투자규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 및 관리 할 수 있다.

**제7조(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대상자 지정)** ① 제6조에 따라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지정된 경우 제10조에 따른 특별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협약 체결 및 지원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실시협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의 목적
  2. 사업기간 및 사업내용
  3. 재원조달 계획
  4. 설계, 인·허가, 건설에 관한 사항
  5.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원사항
  6. 사업이행보증 조건 및 방법
  7. 협약의 효력 및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8. 지역발전에 대한 기여 등 개발이익의 환원 방안에 대한 사항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 ① 군수는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중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 및 법인·단체 등에 투자 유치에 따른 조사·연구용역·자문 등을 할 수 있다.

-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토지매수 등의 업무 대행)** ① 군수는 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 지원 대상자가 토지나 물건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 대행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②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소요되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③ 업무대행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연천군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실시협약을 체결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5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1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경우: 최고 300억원까지
-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

다. 다만 제1항과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1. 진입 도로
2. 상·하수도시설(원인자부담금 포함)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1조(공공기관 등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에 기업체 교육기관 단체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공공기관, 공공연수원, 기업체 연수원, 연구소 등)에 부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설치비 및 장비 설치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4장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 등

**제12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등)** ① 군수는 국내기업의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대규모 제조업 및 첨단업종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운영하려는 자로 공장 건축비 및 기계·장비 설치 등의 시설 투자액이 25억원 이상이며,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기업
2. 첨단업종을 운영하려는 자로 시설 투자액이 15억원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15인 이상인 기업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 투자액은 토지 매입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또는 산업단지 내 간선도로 건설비
2. 녹지시설 조성비
3. 용수공급시설, 상·하수도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업이 별도의 부지를 매입하여 6,000㎡ 이상 또는 50세대 이상의 근로자 숙소를 건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반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성하여 제공하거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 항목 및 비율은 해당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진입도로
2. 상·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3조(입지지원금 등)**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를 위하여 30억을 초과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보조금)** 군수는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상인 유치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할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시설투자액 25억원 초과 부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관외 또는 외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공장시설 및 법인 소재지를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따라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등록일부터 5년까지: 납부한 군세의 100분의 50 이내
2. 공장등록일부터 5년 경과 후부터 10년까지: 납부한 군세의 100분의 25 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비용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기업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조금)** ① 군수는 유치기업이 관내에 공장을 설립한 경우 상시 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15인 이상을 신규 고용한 유치기업으로 15인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 1인당 월 60만원씩 1년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한 기업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고용보조금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채용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17조(공장설계비지원금)** 군수는 군이 조성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설비의 범위 내에서 1백만원의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물류보조금)** ① 군수는 기업이 군에서 조성한 산업단지 내 부지를 분양받아 산업단지 내에서 제조

한 제품을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물류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물류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물류보조금은 기업 별로 분기 당 2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각 기업의 물류보조금 신청액의 총합이 예산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동등한 비율로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노후산업단지 지원)** ①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집적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업기반시설의 정비 및 확충사업
  2.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유지·보수·개량 및 확충사업
  3. 그 밖에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항목 및 금액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제5장 기금의 설치·운용

**제20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자와 기업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2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의 조성액은 50억원으로 하며, 매년 5억원씩 확보하되, 재정형편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출연금
2.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기타 수입금 등

**제23조(기금의 용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한다.

1. 제10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
2. 제12조부터 제19조에 따른 기업지원에 대한 보조금 등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기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되며, 소속 공무원인 투자유치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연천군의회가 추천하는 연천군의회 의원 2명 이내
2. 기금과 관련된 민간 전문가 6명 이내

⑤ 제4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⑦ 기금심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존속기한과 같다.

**제25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투자유치 및 기업지원 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투자유치 담당 직원

## 제6장 보칙 등

**제26조(대규모 투자에 대한 가산지원)** 군수는 제10조,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의 범위를 변경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지원적용 및 제외 범위)**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대규모 투자사업 및 기업에 대한 지원은 군과 지원대상자 간 사전에 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보조금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7조 공장설계비지원금 및 제18의 물류보조금은 사전 협약 체결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의 경우: 투자가 완료되거나 협약에 따른 중간 정산을 한 때
2. 제13조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때
3. 제14조 및 제15조의 경우
  - 가. 신축: 사업개시일 후
  - 나. 증설: 준공 후
4.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지원금은 각각에 대한 지출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다.
5. 제10조제2항의 기반시설 사업비는 지원 대상자와 협의로 정한 때

② 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적은 업종, 환경오염 및 화재 위험성이 많은 업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8조(중복지원 금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와 같거나 유사한 보조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기로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9조(투자유치 포상금)** ① 군수는 민간투자, 유치에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 1. 1.부터 시행한다.